

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심 사 보 고

1998. 11. 4
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결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· 제출일자 : 1998년 10월 27일

· 회부일자 : 1998년 10월 27일

다. 상정일자 : 제15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
·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(1998. 11. 4)상정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
심의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국장 조 규 린)

가. 제안이유

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정한 지방공무원법 취지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고 신체·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인정범위 및 휴직제

도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.

나. 주요골자

- 정년연장조항 삭제
- 휴직에 따른 직권면직규정 보완
- 휴직기간 및 효력에 관한 규정 신설

3. 검토보고

(전문위원 : 김 동 응)

충청북도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
이는 지방공무원법이 개정공포(법률 제5568호, '98. 9. 19)되어 본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

그 주요 내용으로는

-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에 있어서 공무원 정년이 1년씩 단축됨에 따라 정년연장 규정을 삭제하였고 신체·정신상의 장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직권면직하던 것을 도복무조

례의 규정에 의거 휴가기간 이상으로 하였으며

- 휴직에 있어서도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휴직을 명하도록 하던 것을 휴직을 명할 수 있다로 하였고 또한 휴직기간 및 효력에 대한 규정은 새로 신설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- 신·구조문대비표